

농림축산
식품부

NEWS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사육시설 건축허가 규정 삭제

농식품부는 올 2월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가운데 사육시설과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해당 시행령은 돼지와 가금농장의 경우 신규 허가자는 물론 기존 농가에 대해서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 하도록 했고, 기존 농장은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축산업계는 이같은 개정 내용이 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업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기존 안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에 대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개선 권고를 내리자 수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 7인, 민간위원 10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개위 회의에는 한돈·양계·오리 등 축산관련단체 관계자와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회의 결과 규개위는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도록 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내용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의 이행가능성과 정책 집행에 대한 추가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규개위는 자율규제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대안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로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권고에 따라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했고, 법제처는 현재 해당 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각종 가축질병과 축산냄새 민원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각 농장에 요구된다고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 16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공조하여,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 및 평균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가을태풍(9~10월)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가축매몰지,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5월 2일부터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폭염에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수·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 송풍팬, 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지원하고, 가축 밀집사육 방지를 위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폭염특보시 문자 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70세 이상 농업인 12만 9천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돌봄서비스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지자체·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피해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
식품부

NEWS!

농림축산
식품부

NEWS

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 취득시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증빙할 서류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과 하부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기재하고 관련 약정서나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소리없이 급등한 오리 가격에 웃는 ‘이 회사’



오리생산 및 판매업체 ‘정다운’이 오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정다운은 오리를 키워 도축한 뒤 가공식품 형태로 판매하고 부산물인 오리털(우모)은 가공해 전량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오리 사업의 ‘수직계열화(사육-가공-유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정다운은 13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3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31% 증가한 38억원이다. 작년 연매출은 24% 늘어난 1536억원, 영업이익은 202억원을 올려 흑자 전환했다.

수직계열화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다운은 오리 사육부터 가공, 유통까지 관리하고 있다.

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리털도 정다운의 사업 영역이다. 원모를 1차 가공한 뒤에 전량 수출한다. 오리 도압량이 늘어날수록 원재료도 많이 확보되는 구조다. 현재 우모시장 점유율 1위로 하루에 2만5000kg을 처리한다.

증권업계는 물가 상승과 오리 사육시장 구조 변화가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양식용 오리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정다운

NEWS